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2 -8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자양전통시장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상인과 이용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2. 6. 14.(화)

3.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자양로13나길, 자양로15길(시장 출입구 서문~동문)



자양전통시장 통행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시기 : 2022.8.13.부터 (계도기간: 2022. 6. 14. ~ 2022. 8. 12.)

나.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보,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450-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